

## 사업제휴협약서

〈(사)국제옥수수재단〉과 〈(사)우리민족교류협회〉는 〈북한어린이돕기 및 불우청소년돕기 운동〉인 〈통일옥수수〉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제휴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조를 통해 〈통일옥수수〉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조(내용) 〈통일옥수수〉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〈통일옥수수〉 종자의 보급은 〈(사)국제옥수수재단〉이 맡는다.
2. 〈통일옥수수〉의 재배관리 및 〈통일옥수수〉 학교 보급의 제반 업무는 〈(사)우리민족교류협회〉가 맡는다.
3. 수익금은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공동으로 관리, 집행한다.
4. 〈통일옥수수〉 사업의 모든 활동의 주체는 양 기관의 공동명의로 집행한다.
5. 양 기관은 〈통일옥수수〉 사업의 업무협조 및 상호협력체계를 갖추고 각 기관 대표자 2인씩의 4인 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집행토록 한다.

제 3조(협약의 효력 및 기간) 본 협약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해약요구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 4조(기타)

1. 상기 명시한 협약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력, 운용방법, 예산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하며 대표자회의를 통해 상호 동의하에 집행하도록 한다.
2. 협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약 등은 일방의 요구가 있을시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한다.

2014년 12월 18일

(사)국제옥수수재단  
이사장 김준권

사무국장 김명동

(사)우리민족교류협회  
이사장 송기학

총괄사업국장 홍석준